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7. 2. 7.(화) 14:3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기에 대한 경례

③ 개회선언

④ 회의공개 여부 결정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

⑤ 의결사항

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7-05-31~3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23조의2 제1항을 위반한 5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 같은 법 제29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등을 위반한 (주)사람인에이치알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자료제출 등)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책임자 및 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하고,

- 같은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주)사람인에이치알, (주)온라인투어, (주)노랑풍선에 대해 각 1,000만원, (주)매드포스터디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주)아이엠아이에 대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7-05-36)

- 무분별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방지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접근권한의 동의·철회 방법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 접근권한의 범위,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방법,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보고사항

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원칙과 조치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 사업자 설명회 개최 및 홍보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결합판매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이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등 현행 금지행위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다. 종합편성PP '16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종합편성PP 4개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16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및 조치방향을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회의는 2월 14일(화)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4:05)